## 이천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사무처리 규정

소관부서: 감사법무담당관

제정 2000 · 3 · 23 훈령 제106호 개정 2007 · 2 · 15 훈령 제172호 개정 2007 · 7 · 2 훈령 제177호 개정 2008 · 8 · 1 훈령 제181호 (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 일부개정 2013 · 8 · 23 훈령 제214호 일부개정 2019 · 1 · 1 훈령 제274호 (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 일부개정 2023 · 3 · 6 훈령 제315호 (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시장에게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함에 따른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13·8·23〉
- 제2조(사무분장)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따른 사무는 별표와 같이 실·과·소별 로 분장하여 처리한다.
- 제3조(접수 및 이송) ① 지방자치법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2조, 제13조 및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, 서명요청전의 수임자신고, 청구 인명부의 제출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민원서류에 준하여 민원여권과장이 접수한다. 〈개정 2007·7·2, 2013·8·23, 2023·3·6〉
  - ② 민원여권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사법무담당관 및 청구사항의 내용과 관련되는 소관 담당관·과·소(이하 "부서"라 한다)에 통보하고, 청구인명부는 2부를 접수하여 그중 1부를 접수즉시소관 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07·7·2, 2013·8·23, 2019·1·1, 2023·3·6〉
- 제4조(서명에 대한 확인) ① 민원여권과장은 청구인명부를 접수한 때에는 서명한 자가 시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이상의 주민인지와 선거권이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고, 그 결과를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3·3·6〉

- 이천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사무처리 규정
  - ② 소관 부서의의 장은 민원여권과장으로부터 청구인명부를 이송받은 때에는 동일인에 의한 중복 서명인지와 서명요청기간내의 서명인지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3·3·6〉
- **제5조(공표상황의 통보)** ① 민원여권과장 또는 소관 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공표내용을 즉시 감사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3·8·23, 2019·1·1, 2023·3·6〉
  - 1.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취지를 공표한 때
  - 2. 청구인명부가 제출되어 청구내용을 공표한 때
  - ② 감사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내용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3・8・23, 2019・1・1〉
- 제6조(공표의 방법등) ①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다음 각호에 따라 관보 및 시보에 공고하되, 시청게시판에의 게시공고와 컴퓨터통신망 및 일간지방신문에의 게 재를 병용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3·8·23〉
  - 1. 관보게재 : 안전행정부 법무담당관실에 게재의뢰
  - 2. 시보게재: 예산공보담당관실에 게재의뢰하고, 예산공보담당관이 게재
  - 3. 시청게시판에의 게시: 예산공보담당관, 소관 부서의 장이 직접 게시
  - 4. 컴퓨터통신망에의 게재: 예산공보담당관실에 게재의뢰하고, 예산공보담당관이 이 천시홈페이지에 게재
  - 5. 일간지방신문에의 게재 : 예산공보담당관, 소관 부서의 장이 직접1종이상의 일간 지에 광고 또는 기사형식으로 게재의뢰
  -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표일은 모두 같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 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공표일을 명시하여 공고일 전에 미리 게재할 수 있다.
- **제7조(청구인명부의 열람장소)** ①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명부의 열람장소는 민원여권과, 각 읍·면·동의 민원실로 한다. 〈개정 2013·8·23, 2023·3·6〉
  - ② 민원여권과로부터 청구인명부를 이송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청구인명부의 사본 13부를 작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청구인명부의

- 234 -

사본을 작성하기 어려운 때에는 2부를 복사하여 그중 1부는 대민봉사실에 비치하고 다른 1부는 읍·면·동별로 분리하여 해당 읍·면·동의 민원실에 비치할 수 있다. 〈개정 2008·8·1, 2023·3·6〉

- 제8조(조례·규칙심의회 안건제출) 영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명부중 서명자의 무효결정사항,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·결정, 청구에 대한 수리·각하의 결 정등을 이천시조례·규칙심의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소관부서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부의안건을 10부를 감사법무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3·8·23, 2019·1·1〉
- 제9조(조례안의 심사등) ① 소관 부서의 장이 청구에 대한 수리를 한 때에는 주민의 청구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하여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심사요청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3·8·23, 2019·1·1〉
  - ② 조례안의 심사·결재·유인·시의회 제출등의 모든 절차는 이천시법제사무처리규 정에 의한다.
- 제10조(서식의 비치) 민원여권과장은「이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」의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관련서식을 비치하고,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부하여야 한다.〈개정 2023·3·6〉
- 제11조(보고등)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19세이상의 주민수와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공표하고 공표된 내용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07·7·2〉
- 제12조(기록유지) 감사법무담당관은 조례의 제정·개폐청구의 처리사항은 별지서식에 의거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3·8·23, 2019·1·1〉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이천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사무처리 규정

부칙 〈2007 · 7 · 2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제2조 생략

부칙〈2008·8·1 훈령 제181호, 이천시지방공무원 정원 규정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**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** ① 부터 ⑤ 까지 생략

- ⑥「이천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사무처리 규정」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2항 중 "대민봉사실"을 "민원봉사과"로 한다.
- ⑦ 부터 ① 까지 생략

부칙〈2013·8·23 훈령 제214호〉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9·1·1 훈령 제274호,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내지 ⑨ 생략

① 「이천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사무처리 규정」제3조제2항, 제5조제1항 및 제2항, 제9조 및 제12조 중 "기획예산담당관"을 각각 "감사법무담당관"으로 하고, 제8조 및 별표 중 "기획감사담당관실"을 각각 "감사법무담당관"으로 한다.

① 내지 ⑦ 생략

부칙〈2023·3·6 훈령 제315호.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**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** ① 부터 ⑨ 까지 생략

- ① 「이천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사무처리 규정」제3조제1항 및 제2항, 제4조제1항 및 제2항,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7조제1항 및 제2항, 제10조, 별표 중 사무처리 부서란 및 소관 실·과·소란의 사무의 내용 중 "민원봉사과"를 각각 "민원여권과"로 한다.
- ① 부터 ③ 까지 생략

### [별표] 〈개정 2023・3・6〉

#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따른 사무분장표

사무처리 부 서	사무의 내용	근거법령		
감사법무 담당관	1.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사무의 처리지도 총괄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주관	이천시조례제정및개 폐청구사무처리규정		
	2.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사항에 대한 기록유지			
	3. 관련업무 처리에 따른 조례·규칙심의회 개최 및 조례·규칙심의회 개최결과의 소관 실·과·소 통보	이천시조례·규칙심 의회운영규칙		
	4. 소관 실·과·소가 작성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	이천시법제사무처리 규정		
	5. 19세이상의 주민총수와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의 공표 및 경기도 보고	영 15조		
	6.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취지를 공표한 때의 경기도 보고	경기도지침		
	7. 청구인명부가 제출되어 청구내용을 공표한 때의 경기도 보고			
민 원 여 권 과 (민원실)	1.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의 접수 및 교부, 대 표자증명서 교부취지의 공표	영 12조		
	2. 주민서명요청권의 위임에 따른 위임신고의 접수 및 위임신고증의 교부	영 제13조		
	3. 청구인명부의 접수 및 소관 실·과·소에의 이송	영 제15조		
	4. 청구인명부중 무효서명에 대한 확인 및 소관 실· 과·소에의 통보 (주민등록사항과의 일치여부 및 선거권이 없는 자 의 서명여부에 대한 확인을 말한다)	영 제16조		
	5. 조례의 제정·개폐청구에 따른 서식의 비치 및 배부	조례의제정및개폐청 구등의서식에관한규 칙 제2조 내지 제6조		

사무처리 부 서	사무의 내용	근거법령		
소관 실 · 과 · 소	1. 민원여권과장으로부터 이송된 청구인명부 접수 내용의 공표	영 제15조		
<ul><li>※청구된 조례</li><li>안의 내용과</li><li>관련되는 업</li><li>무의 처리</li><li>실·과·소</li><li>를 말한다.</li></ul>	<ol> <li>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의 공개된 장소에의 비치 및 열람사무</li> </ol>	법 제15조 영 제16조		
	3. 청구인명부중 서명자의 무효결정에 대한 조례· 규칙 심의회 안건부의 및 결정사항의 청구인 대표 자에 대한 통지	영 제16조		
	4.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·결정을 위 한 조례·규칙심의회 안건부의	영 제16		
	5.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·결정결과 청구인명부의 수정 및 이의신청자·청구인 대표 자에 대한 통지	법 제15조		
	6.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의 이의신청자에 대한 통지	법 제15조		
	7. 청구인대표자에 대한 청구인명부의 보정요구 및 보정 사무	영 제16조		
	8.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위한 조례·규칙심의회 안건 부의	영 제16조		
	9.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사항의 청구인에 대한 통지	법 제15조		
	10. 조례안의 작성·결재·유인·시의회의 제출 및 제안설명	법 제15조		
	11. 시의회 조례안 제출시 첨부할 의견의 작성	법 제15조의2		
	12. 조례안의 시의회에 부의 및 의결결과의 청구인 대표자에 대한 통지	법 제15조		

[비고] 근거법령란의 "법"은 지방자치법을 말하고, "영"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을 말한다.

### [별지서식]

## 조례제정 · 개폐청구처리대장

접 수 연월일	청구인 대표자	청구인수	조례의 명칭	ユリ	수리	의결 및 공포		
	주소	성명	(명)	또는 청구내용	구분	여부	의결일자	공포일자